

『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』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<b>제25조(약관의 변경)</b></p> <p>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</p>	<p><b>제25조(약관의 변경)</b></p> <p>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(<b>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, 신·구대비표 포함</b>)하고 이용자에게 통지(<b>신·구대비표 포함</b>)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</p>	<p>- 약관 변경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 및 공시사항 구체화</p> <p>·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·구조문 대비표 적용여부 및 제공 의무 반영</p>